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20 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황운하·강경숙·김재원

김준형 • 정춘생 • 신장식

이해민 • 서왕진 • 박은정

차규근 • 백선희 • 김선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,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「행정수도 건설을 위한특별법」을 제정하고,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항제8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0319호) 및 「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031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42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청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장이 승계한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은 행정수 도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)이 법 시행 전에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한 고시·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신청·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

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수도건설청장의 행위 또는 행정수도건설 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수도건설청, 행정수도건설청장 또는 행정수도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	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		
직 등) ① (생 략)	직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	②		
라 설치된 부·처·청과 다음			
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, 중			
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			
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			
고는 설치할 수 없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8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	8. 「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		
한 연기・공주지역 행정중심	별법」 제42조에 따른 행정수		
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	<u>도건설청</u>		
법」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			
<u>복합도시건설청</u>			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⑩ (생 략)	③ ~ ⑩ (현행과 같음)		